

건강증진 보험상품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 모 두 발 언

---

2019. 7. 2. (화) 15:00~16:00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금 용 위 원 장  
최 종 구

# I.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보험업계와 헬스케어 회사, 소비자단체,  
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 등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하여,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간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지,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II. 보험의 패러다임 변화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

---

보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금융산업 중 하나로서,  
최초의 보험은  
기원전 1750년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1750년부터 현재까지  
보험(保險)은 한자 그대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 고도화와 기술발전으로  
그 “위험”의 범위와 “보호”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따른 위험,  
가상화폐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  
미세먼지 피해와 같은 신종 자연재해 등

기존에 없었던 위험들이 나타나면서  
보험산업에 기대하는 위험보장의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보험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그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왔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호 방법은  
혁신기술을 통해  
사고 그 자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논의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는  
이러한 보험의 패러다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3,5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은  
그동안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과 관리는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보안 기술과 어플을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하루 동안의 걸음수를 측정하고,  
목표로 세운 걸음수를 달성할 경우  
쿠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예방과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이처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개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Ⅲ.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가 현재 추진중인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존의 치료 부문 의료서비스에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의미

따라서 일본의 사례\*처럼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일본 금융청은 '17년 일본생명의 건강증진 컨설팅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승인

일부에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시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되어,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IV. 맺음말

---

우리나라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의료업, IT시스템, 센서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산업이 융합된 분야인 만큼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혁신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업계가 느끼는 어려움을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